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79
----------	-------

발의연월일 : 2025. 9. 15.

발 의 자 : 이정문 · 박 정 · 이개호
김 윤 · 이인영 · 이연희
한민수 · 안태준 · 채현일
이재관 · 문진석 · 이학영
조승래 · 박수현 · 복기왕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자원순환과 환경 보호를 위해 ‘수리할 권리’가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일정 기간 부품 단종 금지, 사설 수리센터 허가 등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탄소 배출 저감을 도모하는 법률을 제정·시행 중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법 제20조에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 및 수리 부품 확보 정도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질적 수리권 보장과 수리 편의성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민의 경제적·환경적 이익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신설 및 제52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사용”을 “사용 및 수리할 권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을”을 “사용과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의 보장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확보”를 “확보 및 공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리에 필요한 기술 정보 및 매뉴얼 제공

4. 수리 가능 기간 및 부품 보유 기간 명시

제3장에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수리 용이성 등급제) ① 수리할 권리의 대상 제품을 생산하려는 사업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리권 적용의 가능성에 관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1. 수리할 권리 관련 정보 제공의 수준

2. 수리 가능한 기능과 부품의 비율

3. 수리의 난이도

4. 부품 공급의 원활성

5. 제품 특성에 따른 세부 특이사항

6. 그 밖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등급분류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등급분류를 받은 사업자는 제품을 생산할 때 등급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3(금지행위) 수리할 권리의 대상 제품을 생산하려는 사업자는 수리를 위한 부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수리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제품의 수리를 어렵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품의 수리를 어렵게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지속가능한 제품의 <u>사용</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 품의 지속가능한 <u>사용</u> 을 위하 여 그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아니하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지속가능한 제품의 <u>사용</u> 및 <u>수리할 권리</u>) ----- ----- ----- -- <u>사용과 소비자의 수리할 권</u> <u>리의 보장을</u> ----- ----- ----- ----- -----.
1.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의 <u>확보</u>	1. ----- <u>확보 및 공급</u>
2. (생략) <u><신 설></u>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u>수리에 필요한 기술 정보 및</u> <u>매뉴얼 제공</u>
<u><신 설></u>	4. <u>수리 가능 기간 및 부품 보</u> <u>유 기간 명시</u>
3. (생략) <u><신 설></u>	5. (현행 제3호와 같음)
	<u>제20조의2(수리 용이성 등급제)</u> ① <u>수리할 권리의 대상 제품을</u> <u>생산하려는 사업자는 사전에</u> <u>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다음 각</u>

호의 구분에 따라 수리권 적용
의 가능성에 관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1. 수리할 권리 관련 정보 제공
의 수준

2. 수리 가능한 기능과 부품의
비율

3. 수리의 난이도

4. 부품 공급의 원활성

5. 제품 특성에 따른 세부 특이
사항

6. 그 밖의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등급분류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
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
다.

③ 등급분류를 받은 사업자는
제품을 생산할 때 등급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방법으로 제품에 표시하여
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3(금지행위) 수리할 권리
의 대상 제품을 생산하려는 사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u>1. ~ 4.</u> (생 략) ② · ③ (생 략)	<u>업자는 수리를 위한 부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수리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제품의 수리를 어렵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품의 수리를 어렵게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52조(과태료) ① ----- ----- ----- -----. <u>1.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u> <u>2. ~ 5.</u>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